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05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2. 11. 23.

판결 선고2022. 12.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97,538,722원 및 그중 196,752,943원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2022. 4. 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2021. 2. 4.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보증원금 9,500만원, 보증기한 2020. 4. 16.의 보증약정과 ②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20. 10. 8.의 보증약정(이하 위 각 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다.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1. 2. 26.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7. 16. C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197,098,143원(= 원금 195,000,000원 + 이자 2,098,143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적절차 비용 387,569원을 지출하였으며,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398,210원이다.

라. 피고 A은 2021. 2.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는 ① D일자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② 2021. 2. 4.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 2. 4. 접수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고, 피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345,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97,538,722원 및 그 중 원금 196,752,9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조로 이 사건 특허권과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97,538,722원 및

그중 원금 196,752,943원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대위변제를 한 날의 다음날인 202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2. 4.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각 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2일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가 2021. 7. 16. C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이 사건 특허권과 상표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행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3) 피고 B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B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4)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 2. 4.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이범용

별지

1) 청구취지 제2의 나.항을 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이 선행한다.